■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31.>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사항	허가번호	
	사격장의 명칭 (전화번호:)	
	사격장 설치 장소	
	착공일 년 월 일	준공일 년 월 일
변경내용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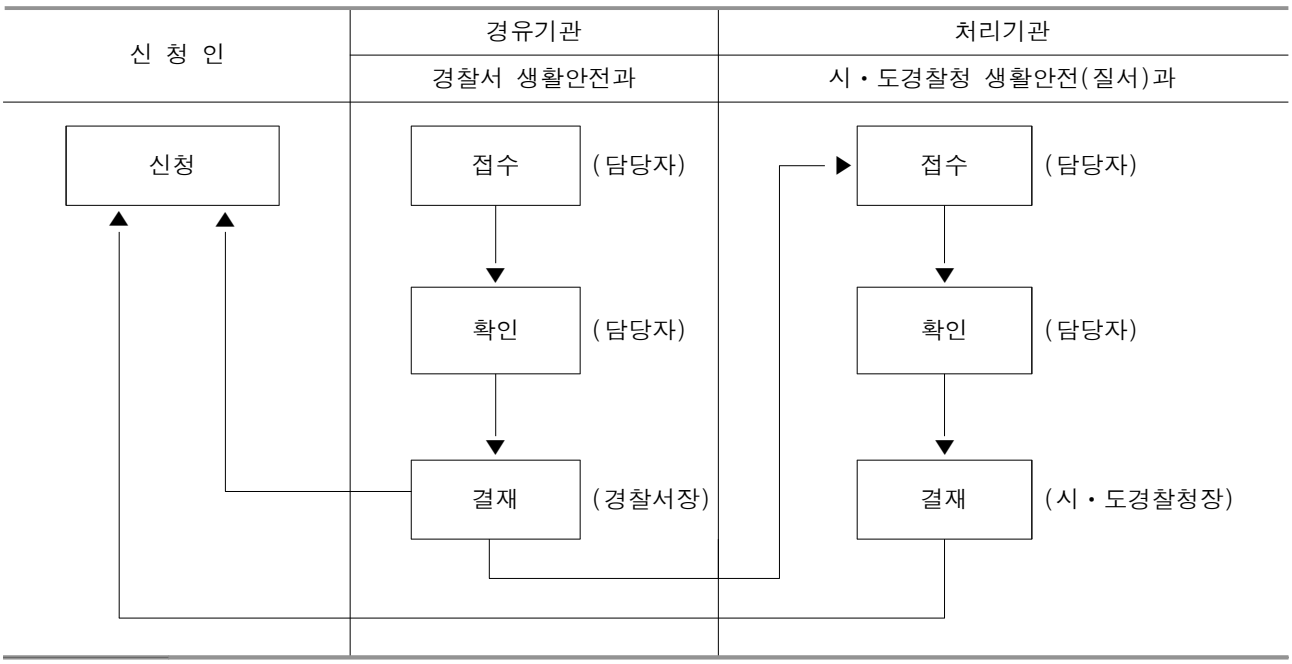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격장 변경설계도 1부 2.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 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사격장 설치허가증 *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8,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신 청 인
경유기관
경찰서 생활안전과
처리기관
시・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
신청
접수
(담당자)
확인
(담당자)
결재
(경찰서장)
접수
(담당자)
확인
(담당자)
결재
(시・도경찰청장)